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2024. 10. 8.(화)

검 토 안 건	제 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미포구 장애인기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앤]"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4. 9. 27.

○ 회부일 : 2024. 9. 30. (의안번호 : 24-117)

2. 제안이유

○ 양육지원금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금액(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기간, 지원절차(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4. 8. 29.~ 9. 18.(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양육지원금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금액을,
 -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지원기간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를 규정하는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국비, 시비, 구비로 아래 표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구 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남성장애인 배우자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무는 (1) 성장(배인 - 무는 단선장(배인		모든 여성장애인 모든 남성장애인	
지원금 1,200천원		1,200천원	1,500천원	
(국비 50%, 시비 50%)		(시비 100%)	(구비 100%)	

그러나 장애인가정의 경우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과정에서 경제적· 신체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종합검토의견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2세~7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정 취지와 지원대상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과 "2021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 11. 28. 보건 복지부의 지급가능 회신이 있어 절차상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	신희선	이민영
사회보장과	(8880)	(88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제1항

제4조(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강나은
연 락 처	02-3153-8873

참고자료

구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마포구 장애인 가정 최근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

Я	2024.8	2023	2022	2021	2020
신청건수	5	11	11	13	14

^{*} 최근 5년간 평균 신청건수 : 10.8건 (2024년 8월 기준)

3.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공문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요청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 관련

가. 마포구 장애인동행과-7578(2023.03.29)호, 19587(2023.08.30) 및 100702(2023.11.17)호

나. 마포구 교육정책과-시스템(2023.07.3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로 협의 요청하신 "장애인양육지원금 지급" 사업과 "타시도 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완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마포구청장(장애인동행과장),교육정책과장,의회사목독자(자동원과 (장(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조정 사회보장위원 전결 2023, 11, 28, 주무관 **장수호** 과장 **이영지** 회사무국장 **이상원**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7989 (2023. 11, 28.) 접수 장애인동행과-101283 (2023. 11, 28.)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733 팩스번호 044-202-1976 /jang566@korea,kr / 비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